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314
번호	

제출년월일 : 1998. 4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98.2.20)되면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쟁의 행위의 중지명령등에 관한 사항이 시도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들 사무를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무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단, 2개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은 제외)
 -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 노동쟁의 행위의 중지명령 및 폭력행위등의 신고 수리
 -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등
- ※ '97.3.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노동부)로 환수되었다가 다시 시도로 이관된 사무임

관련법령(별첨)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5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2조.제13조 등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에 제5호내지 제21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분야별	연번	사 무 명	관 련 법 령
경 제 과	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2개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은 제외, 이하 제21호까지 같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6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교부 및 재교부	동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제4조
	7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수리	동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 10조, 동법시행규칙제3조, 제5조.제6조
	8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동법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9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명령	동법제16조, 제21조
	10	노동조합의 자료 제출요구	동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 12조
	11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수리	동법제28조, 동법시행령제 13조, 동법시행규칙제10조
	12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동법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13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 및 공고	동법제36조
	14	노동관계의 지원 신고수리	동법제40조, 동법시행령제 19조, 동법시행규칙제11조 의3

분야별	연번	사 무 명	관 련 법 령
경제과	15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동법제42조, 동법시행령제제22조, 동법시행규칙제12조
	16	직장폐쇄 신고 수리	동법제46조, 동법시행규칙제12조의2
	17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제96조, 동법시행령제34조
	18	노동조합의 대표자등에 대한 명령등의 통보	동법시행령제11조
	19	노동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동법시행령제17조, 동법시행규칙제11조의2
	20	폭력행위등의 신고수리	동법시행령제18조
	21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동법시행규칙제7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발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호(생략)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행정관청 "이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2호(생략)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4호(생략)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3호(생략)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태만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해산사유)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1호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노동자와 3분의2이상 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제42조(폭력등의 금지) ③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96조(과태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

제9조(신고증의 보완요구등)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2호(생략)

제11조(명령등의 통보)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4호 :생략)

② 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폭력행위등의 신고)①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제2항.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4(생략)

제7조(노동단체카드)①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 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95條 (事務의 委任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務所·出張所를 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0>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업무 인계·인수지침

1. 인계인수원칙

- 가. 행정관청(특별시·광역시·도지사)은 본 인계·인수 지침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 업무를 위임한 기관(시·군·구청장)에 2부씩 배부하고 업무가 위임된 기관을 지휘하여 인계인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 나. 지방노동관서는 노사협력과장(근로감독과장) 책임하에 업무 인계 담당감독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인수관청과 협의(행정자치부와는 협의하였음)하고, 인계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인수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업무 인계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문서로 협조 요청)
- 다. 지방노동관서는 인계대상인 노동조합 관련업무 및 서류 일체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시·도 및 시·군·구)에 직접 인계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붙임 2 참조)
- 라. 지방노동관서는 '97. 12. 31 현재 관할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단체카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98.4.20까지 전산입력한 후 관할 행정관청에 인계한다.('98.3월말까지 전산화 완료 예정)
- 마. 「인계·인수시기」는 인계기관과 인수기관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4.30자로 완료한다.

2. 인계인수 방법

- 가. 기관별 인계·인수서(붙임 1 참조)는 4부를 작성하여 기관장 입회하에 관련서류·장부 등을 누락없이 인계·인수하고, 인계·인수서는 인계·인수자와 인계·인수기관에서 각 1부씩 5년간 보관한다.
- 나. 인수기관(시·도지사)은 동 지침에 의한 업무 인계인수 상황을 '98. 5. 3까지 노동부 노동조합과에 통보한다.
- 다. 미결 민원서류 등 미처리 업무는 건별로 진행사항 및 향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인계·인수한다.
- 라. 현재 사용중인 서류 목록 및 보존서류 목록은 「붙임 3 서류목록 예시표」를 참조하여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인계한다.

3. 기 타

- 가. 인계기관(인계자 포함)은 인계·인수서 작성에 있어서 부속 서류 등 내용을 검토하고 현물을 실사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 나. 인계기관(인계자 포함)에서 미결사무 등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인계자가 지며 입회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다. 특별시·광역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인수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를 5.1.이전에 실시한다.

※ 노동조합업무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4월말경 노동부 주관으로 실시 예정임